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8. 22 선고 2024가합54971 판결 [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

담당변호사 오종윤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7. 25.

판 결 선 고 2024. 8. 22.

주 문

- 피고는,
가.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50,000,000원을 지급하고,
나. 원고에게 5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 6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
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재판장 판사 정회일, 판사 박승균, 판사 이영주

별지